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5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문정복 · 이개호
정준호 · 김문수 · 안도걸
최혁진 · 이성윤 · 조계원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,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.

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(국민동의청원)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.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.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(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)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(대안반영폐기)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.

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.

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청원하고,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,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.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(안 제125조의2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제1항 중 “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
2. 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

제125조제6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5항 및 제12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5조의2(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) ① 제1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

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청원자가 18세 이상의 국민일 것
 2. 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을 첨부할 것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3조(청원서의 제출) ① 국회 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<u>의원의</u> <u>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</u> <u>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</u> <u>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</u> <u>국민의 동의를 받아</u>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~ ⑤ (생 략)	제123조(청원서의 제출) ① ----- ----- <u>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</u> <u>법으로</u> ----- ---. 1. <u>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</u> <u>로 제출</u> 2. 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 <u>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</u> <u>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회</u> <u>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</u> <u>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</u> <u>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</u> <u>아 제출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5조(청원 심사·보고 등) ① ~ ⑤ (생 략) ⑥ <u>제5항에도 불구하고</u>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 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 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	제125조(청원 심사·보고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제5항 및 제125조의2제1항-</u> ----- ----- -----

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⑦ ~ ⑨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25조의2(법률의 제정·개정

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) ① 제1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청원자가 18세 이상의 국민일 것

2. 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

	<u>성한 법률안을 첨부할 것</u> <u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.</u>
--	---